

대통령령 제22224호
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2010년 6월 28일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의 개정(법률 제9770호, 2009. 6. 9 공포, 2010. 7. 1 시행)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이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,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·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,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,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,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환경부 공고 제2010-193호

야생동·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2010년 6월 18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대통령 재가(‘09. 5. 25)를 거쳐 확정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에 포함된 수도사업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·변경권한의 지방이양을 법률에 반영하고,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설치제도의 보완 및 물 사용 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도 운영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원 정의에 '강변여과수'를 명시하여 상수원범위를 명확화(안 제3조 제2호).
- 나.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절수설비 설치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며,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(안 제3조제29호·제30호·제31호, 제6조제5항, 제15조제5항·제6항, 제15조의2, 제87조 제2항제4호·제5호)
- 다. '해수담수화시설'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3조 제32호, 제75조).
- 라. 수도사업 인가권한 중 일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·변경권한을 시·도지사로 이양(안 제7조, 제17조, 제49조, 제63조).
- 마.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신용카드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국제기본법 규정을 준용토록 함(안 제71조제3항, 제71조의2).

- 바.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벌칙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여 벌칙규정을 합리화(안 제84조, 제85조, 제87조제2항제6호·제7호·제8호)

환경부 공고 제2010-192호

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2010년 6월 17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정이유

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제조, 수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면제규정을 마련하고,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 무방류시설,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- (1)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9개 물질 중에서 린단(Lindane)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면서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
- 나.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 신설
- (1)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(안 제14조제3항제1호)
 - (2)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(안 제14조제3항제2호)
- 다.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(개정안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7조)
- 라.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면제 제도 도입(안 제24조의2제2항)
- 신고대상 관리대상기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
- 마.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도 도입(안 제29조의2 신설)
- (1)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양사무의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바.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로 집행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함
- (1)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범위나 측정주기 또는 측정횟수를 위반한 자(안 제37조제1항제1의2호 신설)
 - (2)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이나 범위를 위반한 자(안 제37조제1항제1의3호 신설)
 - (3) 관리대상기기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자(안 제37조제2항제2호)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